

부산지방법원 2023. 7. 12 선고 2022나71349(본소), 2022나71356(반소) 판결

[부당이득금반환 ·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3. 6. 7.

판 결 선 고 2023. 7. 12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가단2670(본소), 2022가단 4096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

63,593,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2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.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, 피고가 수고비를 주겠다며 원고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내고 통장과 도장을 맡기게 한 다음, 피고와 원고 사이에 허위 내지 가상거래를 발생시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63,593,660원을 부당하게 모두 수령해 갔고,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 원고에게 위 부당 수령한 환급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3,593,66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3,593,66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아도 원고 명의 계좌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,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우중, 판사 위은숙, 판사 신승아